

# 대출상품 설명서 표준안(고객 교부용)

- ◆ 본인은 주식회사 지엠이대부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대부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거래의 주요내용 및 대부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본인)  
상당일 : 2023 . . .

상당자 :

(서명 및 날인)  
연락처 : 02-765-5555

##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출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월	채권보전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 ( <input type="checkbox"/> 보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보증)
대출개시일	20 . . . 대출기간만료일 20 . . .		
대부신청금액	금 원정(W )		
실제수령금액	금 원정(W )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부이자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정 ( 연 19.9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연체이자율	연체기간 1일 이상 연 20 % *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은"약정 금리+3%p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b>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b></li> <li>✓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b>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b>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b>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b>하므로 심사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li> </ul>			
대출상환방식	<input type="checkbox"/> 일시상환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input type="checkbox"/> 대부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부기간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상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할상환	매월마다 아래의 방법으로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원금균등분할상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이자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是大부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 <input type="checkbox"/> 이자는 매월 대부개시 해당일에 지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자는 매월 ( )일에 지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이자지급일 해당월에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을 지급일로 함 ※ 대부기간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 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함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함		
이자율등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최고이자율(연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이때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봄 ※ 법정최고금리(연20%)의 위반 여부는 대부금의 실제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6개월 10%, 3개월 5%, 월 1.666%, 일 0.0547%임 <예시> 대부원금 1,000만원인 경우 기간별 이자납입 최고액(소수점 단위 절사)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한도 : 1일 5,479원, 10일 54,794원, 30일 : 164,383원 90일 : 493,150원		
상환계좌	은행명 : <u>우리은행</u> 은행 계좌번호 <u>모계좌</u> 예금주 : (주)지엠이대부 ※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는 계약 후 발급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u>대부원금 및 이자는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계좌로 입금</u> )		

중도상환수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대부금액 × ( % ) × (잔여일수 ÷ 대부기간)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b>고객이 부담</b> 하는 금액임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대부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b>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b> 됨 ※ 대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함 ※ 대부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연 % )내 임	
비용 및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법무사 수수료 - 채권자(대부업자) 부담	₩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매입,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말소,확인서면주소변경 등 담보 설정에 직접 필요비용 -채무자(설정자) 부담	₩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수수료 설정시 - 대부업자가 부담, 행사시 -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비용(항목 : _____ )	₩ _____ 원
	※ <b>채무자의 채무불이행</b> 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b>채무자가 부담</b> ※ <b>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b> 대부회사가 부담한 제3자 지급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b>채무자가 부담</b>	

## 2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① 상환방법별 특징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상환방법별 특징	<p>상환금액</p> <p>원리금</p> <p>이자</p> <p>원금</p> <p>대출기간</p>	<p>상환금액</p> <p>원리금</p> <p>이자</p> <p>원금</p> <p>대출기간</p>	<p>상환금액</p> <p>원금</p> <p>이자</p> <p>대출기간</p>
	<p>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p>	<p>매월 대출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p>	<p>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지만 부담하는 방식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p>

②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1,200만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20%로 대출받은 경우)

대부기간 연간납입액	1년			3년			5년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1년	1,330	1,333	1,439	603	535	239	458	381	239
2년	-	-	-	523	535	239	410	381	239
3년	-	-	-	443	535	1,440	362	381	239
4년	-	-	-	-	-	-	313	381	239
5년	-	-	-	-	-	-	266	381	1,439
합계	1,330	1,333	1,439	1,570	1,605	1,920	1,810	1,907	2,399

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집니다.**

1. **대출기간이 길수록 부담이자는 많아집니다.**
2.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이자는 달라집니다. :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3. **만기일시상환**이란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3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① (기한의 이익 상실) 대부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일부 내용)

「기한의 이익」이란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서 채무자인 대부이용자가 당초 약정한 대부기한까지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 상환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나.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채권의 양도) 대부업자가 계약서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연체정보 등 등록)

- 가. 대부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되며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연체정보 등이 정보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하여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다.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간에 해당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대부중개수수료) 대부이용자 등은 대부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⑤ (대출사기에 주의)

- 가. “저금리로 대한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 등은 대출빙자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나. “개인신용평점 상향조정”, “대출진행비용”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⑥ (대부원리금 상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대부원리금 상환계좌로만 대부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⑦ (서민정책 금융상품 활용) 정부에서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운영 중이므로 신청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연체이자율 상한)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청약의 철회)

- 가.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될 것 요청한 법인)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나.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관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관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차용)

⑩ (위법계약 해지권)

- 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⑪ (자료열람요구권)

- 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나. 대부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다. 대부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⑫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내용 작성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거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대부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대부회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⑬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가. **최초 심사에 비해 신용평점이 하락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전문직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 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나.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 심사거절 시 발생한 비용(법무사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유의사항

① 이자율의 산출기준(대출금리 결정 요인)

- 가.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나. 원가요소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합니다.
- 다.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약정금리**는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반영됩니다.
- 라.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평점 관련

- 가. **신용공여(대출 등)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나.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라.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문의처

- 가. 금융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02-765-55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애로사항 등은 하단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상담.문의처	구 분	상담.문의처
대부업등록여부조회	금융감독원(1332)	민원.분쟁 신청	금융감독원(1332)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1332)	불법대부.추심신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정책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1397)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 설명서는 대부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부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